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18. 11. .
발 의 자	윤종호 의원 외 4명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종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8. 11. .

발 의 자 : 윤종호 · 권재욱 · 송용자 · 양진오
장세구(5인)

1. 제안이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침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우범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방범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나. 방범시설 등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지방자치법」

나.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개선사업
2.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 구역 조성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개선사업
4.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방범시설 등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의 위험성 등 평가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
4.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중 홀로 거주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미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를 제14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험성 등 평가 기준(제9조 관련)

NO. 성 명

평가지표	점 수 표					점수
범죄발생 빈도 (신고건수)	1	2	3	5	8	
	10년에 1회	5년에 1회	3년에 1회	1년에 1회	1년에 2회 이상	
강력범죄 발생 (5대범죄)	1	2	3	5	7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범죄에 따른 재해 (피해정도)	1	2	3	4	5	
	영향 없음	경미한영향 (단순 절도, 1백만원 이하)	보통 (경미한 상해, 5백만원 미만 손해 등)	중대재해 (상해, 5백만원 이상 손해 등)	중대재해 (사망, 성폭력 등)	
침입위험도	1	2	3	4	5	
	전혀 위험하지 않음	위험하지 않음	보통	위험	매우위험	
인구학적 요소	1	2	3	4	5	
	4인 가구 이상	3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등	독거노인, 장애인	
주택노후도	1	2	3	4	5	
	5년 이내	5년 초과 ~ 10년 이내	10년 초과 ~ 15년 이내	15년 초과 ~ 20년 이내	20년 초과	
주택 유형	1	2	3	4	5	
	침입이 매우 어려운 유형 (신축 아파트, 주상복합 등)	침입이 어려운 유형 (아파트)	보통 (연립주택 등)	침입이 용이한 유형 (원룸,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침입이 매우 용이한 유형 (단독주택, 다세대, 원룸 등의 1,2층)	
감시시설 유무	1	2	3	4	5	
	감시시설 有 (경비원있음)	감시시설 有 (CCTV있음)	감시가능 여부 보통	CCTV가 있으나 사각지역 등	감시시설 無	
범죄유발 시설과의 거리 (유흥시설, 다중이용 시설 등)	1	2	3	4	5	
	5Km 초과	5Km 이내 ~ 4km 이내	4Km 초과 ~ 3km 이내	1Km 초과 ~ 2Km 이내	1Km 이내	
야간 밝기	1	2	3	4	5	
	매우 밝음	밝음 (가로등 인근 지역, 적동 조도 등)	보통 (가로등이 있으나 조도가 낮은 지역)	어두움 (가로등 조도가 낮거나 거리가 먼 지역)	매우 어두움 (가로등 없음)	
핫스팟 (Hot Spot)	1	2	3	4	5	
	범죄다발 지역과 매우 멀	범죄다발 지역과 거리가 있음	보통	범죄다발 지역 인접	범죄다발 지역	
합 계						

- 총 11개 항목으로 60점 만점기준 30점 이하는 지원불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u>“방법시설 등”이란 침입범죄</u> <u>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문, 방</u> <u>범창, 방법용 창살, 창호용 잠</u> <u>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u> <u>한다.</u>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 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u><신 설></u> <u><신 설></u>	제3조(기본원칙) ----- ----- --. 1. ~ 5. (현행과 같음) 6. <u>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u> <u>노력하여야 한다.</u> <u>제8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시장은</u> <u>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u> <u>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고려</u> <u>하여야 한다.</u> 1. <u>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u> <u>차별 개선사업</u> 2. <u>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u> <u>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u> <u>한 안전구역 조성사업</u> 3. <u>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u>

<신 설>

환경 개선사업

4. 방법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방법시설 등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의 위험성 등 평가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방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

4.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중 홀로 거주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미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u>제8조</u> · <u>제9조</u> (생략)	<u>제10조</u> · <u>제11조</u>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u>제10조</u> · <u>제11조</u> (생략)	<u>제12조</u> · <u>제13조</u>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u>제12조</u> (생략)	<u>제14조</u> (현행 제12조와 같음)

관계법령

□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